

26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통합공고

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시 북구 매곡산업단지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5년 07월 0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울산광역시장,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이사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명)**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 **(지원규모)** 총 1.43억원, 9개사 내외 지원 (최대30백만원/개사)
 - * 기업부담금은 프로그램별로 상이, 세부 지원내용 참조
- **(프로그램 및 내용)** 4개 세부지원 프로그램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10.31. 까지
- **(지원방법)** 지원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

2. 지원대상(신청기업)

- **(지원자격)** 울산시 북구 매곡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뿌리산업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준비 중인 기업 또는 울산금형산업협동조합 회원사
 - * 뿌리기업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별첨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구분	신청자격 요건
공통	1. 「지역중소기업법」 상의 지역중소기업 (중소기업 ¹⁾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²⁾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사업장소재지(본사, 공장, 연구소 등)가 신청 프로젝트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개별	3. 프로젝트별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기업 (선택한 프로젝트에 한함)
	4. 그 외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

○ (신청제외 대상)

<p>※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8조 4항_기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3. 지원프로그램

○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 건수	지원금 (천원)	비고
패키지 지원	①시제품 제작	○ CAx* 기술 적용 제품고급화, 상용화, 기술고도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5건	최대 25,000	기업당 최대 3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②기업맞춤형 기술컨설팅	○ CAx 기술을 활용한 제품개선, 공정개선, 품질개선 등 기업 맞춤형 제조현장 기술지도 및 최적의 솔루션 제공 ○ 전문인력(설계·해석·가공 등)의 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기술 지원	2건	최대 3,000	
	③시험분석/인증, 지재권 지원	○ 제품 품질 경쟁력 확보 및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분석, 인증지원 ○ 선진 제품의 기술 조사분석	2건	최대 4,000	
장비활용 애로기술 지원		○ 울산TP에 기 구축된 장비를 활용한 선행해석, 설계, 가공 및 금형 보수, 측정 및 품질 평가 등 제품 생산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6건	무상 지원	

- * CAx기술 : CAD, CAE, CAM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엔지니어링 문제를 분석 및 평가하는 Total Engineering 기술
- * 패키지 지원은 지원금의 10%를 기업이 부담하고, 기업부담금은 부가세를 지원하지 않음
- * 패키지 지원 내 사업은 패키지를 구성하여 지원하여야 지원 가능
예) ①+②, ①+③ 등 최대지원금 내 지원가능
- * 평가 결과와 기업 수요에 따른 '최대지원금' 및 '지원 건수' 는 변동 가능
- * 수혜기업 선정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고,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장비활용 지원은 공모와 상시모집을 병행하며, 최대지원금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4.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사전검토)** 중복지원,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고 공고상 명시된 사전제외대상 여부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태 등 사실 확인 중심으로 필요시 실시
 -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담당자 1인이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 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가능
 - 실태조사 추진시 결과는 평가위원회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정리

구분	점검방식	수행주체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평가위원, 담당자

- **(평가위원회)** 수행기관은 선정·평가 과정을 공정하고 심도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위원회 진행, 결과의 정리 순으로 구성 및 추진

구분	점검방식	수행주체
서면평가 (비대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평가위원 5인
발표평가 (대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검토 및 대면 질의응답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평가	

< 지원기업 선정 평가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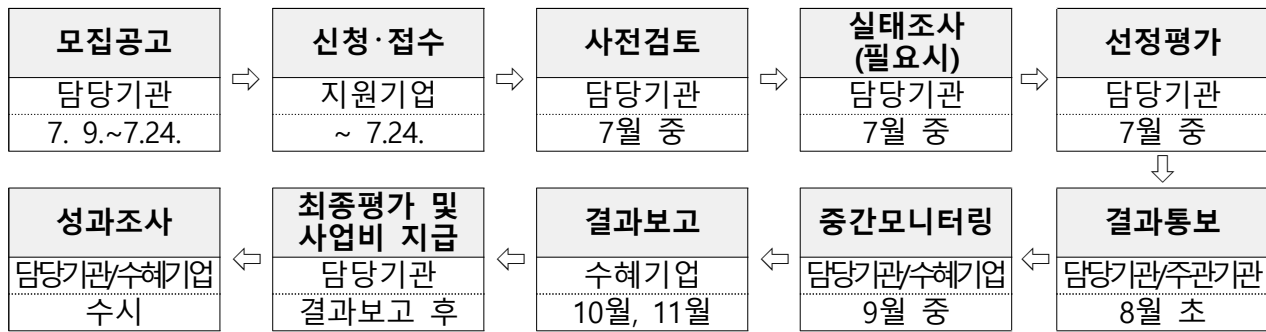
항목	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20)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10
	○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10
지원내용의 타당성 (50)	○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 사업계획의 이행가능성	10
	○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10
	○ 사업비 집행의 실현 가능성	10
	○ 사업 추진의 투명성	10
기대효과 (30)	○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15
	○ 고용 및 매출 증대	15

○ (선정기준)

구 분	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	선정기준
서류 및 발표평가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계산함 -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같은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함	- 평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기업부터 선정

5.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2026. 7. 9.(목) ~ 7. 24.(금), ~ 18:00까지
- (선정평가 추진일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7. 9.(목) ~ 7. 24.(금), ~ 18:00까지
- (접수기간) 2026. 7. 9.(목) ~ 7. 24.(금), ~ 18: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양식 기재 후, 접수처로 우편, 방문, E-Mail로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울산시 북구 매곡산업 35,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219호
 - 담당자 연락처(E-Mail 접수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재)울산TP	임준형 주임	052-219-6770	bellkap@utp.or.kr
(재)울산TP	박채원 연구원	052-219-6634	weon323@utp.or.kr

* 사업문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신청시	① 사업 신청서 및 수행 계획서 * 복수 지원 시 지원 프로그램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④ 중복지원 금지사항 약속서 ⑤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뿌리기업 확인서 ※ 뿌리기업확인서가 없는 기업은 선정후 제출가능. 단, 사업기간 내 '뿌리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 사업신청시 뿌리기업확인서 발급가능여부 확인 후 지원 요망
	선정시	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 표준재무제표 (2022~2024년) 각 1부 *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가능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제출서류 미제출시 신청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사업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E-mail을 통해 평가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계획서상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동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계획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붙임으로 제출해야하며, 필요시 온·오프라인을 통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된 기업지원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 할 수 있음
- 사업비 지급은 수혜기업의 선지출 후 사업 완료 후 정산으로 진행됨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 될 수 있으며, 사업 협약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음
- 부가세, 관세 등은 사업비로 집행 할 수 없음

8.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 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평가 결과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연구자 또는 참여기업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연구자 또는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9.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 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류/발표/현장) 등에 이의가 있는 때
- 이의신청 방법(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
 - (신청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자동차기술지원단 자동차기술평가센터로 이메일(bellkap@utp.or.kr)을 통하여 제출
- (작성방법) 신청기업(기관)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면평가, 비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10. 관련법규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관련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관리지침